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20181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201816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가합555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현권

변론 종결2024. 8. 22.

판결 선고2024. 11. 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가합555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D, 본점소재지: 동두천시 E] 사이에 별지 기재 용수지분에 관하여 2021. 3. 11.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F조합[법인등록번호: G, 본점소재지: 동두천시 H]에 별지 기재 용수지분에 관하여 2021. 3. 11.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의 각주1) 및 9쪽의 7~11행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황성미

판사허익수

별지

1) 제1심 판결 2쪽 각주1)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채무자인 C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용수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